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0-36호 2000. 2. 9

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00. 1. 21. 법 제6,302호)으로 정상시가변동율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발부담금의 연·분납 및 물납신청기간 폐지등 현행제도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상지가변동율을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지가변동율중 높은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물납토지의 가격 산정시는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만을 적용하여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정기예금이자율을 연10%에서 연8%로 함.
- 나.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신청기한을 폐지하고, 물납토지의 가액은 종료시점지가에 물납승인일까지의 지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물납받은 토지로 지자체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의 부과종료시점은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검사일등으로 하여 부과종료시점을 명확히 함.
- 라.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간산금 등에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토지지분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 마.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5년이내에 다시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연접한 토지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바. 개발부담금을 일시에 납부가 곤란하여 연납·분납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연·분납을 허용하던 것을 개발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개발부담금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서 담보만 제공하면 연·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며,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연10%에서 8%로 함.